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기능, 위치, 접근성,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등록, 폐관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은도서관 진흥법」, 「건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및 접근성)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점 이상의 자료
2. 건물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연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 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과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폐관신고서 및 등록증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

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

제11조(운영 인력)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생략

2. ~ 5. 생략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
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
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 ⑧ 생략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소 관 부 서		시립중앙도서관
입 안 자	과 장	류 정 숙
	팀 장	최 희 경
	담 당 자	정 예 영 (480-4663)